

의안번호	제 11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 
관리·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항목 적용 문구 일부를 수정하고,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농업인 단체, 협회 등의 참여·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·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 문구 일부 수정(안 제12조제3항)
-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 항목 신설(안 제12조제3항제8호)

## 3. 의안전문 : 불 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 모두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·활동기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2조(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 생산·유통지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<u>각 호 모두</u>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2조(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 생산·유통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 <u>각 호</u>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협회 등 민간단체 참여·활동기간</u></p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민간단체의 역할)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, 유기식품등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·유통·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(이하 “민간단체”라 한다)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·유기식품등·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·훈련·기술개발·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·유기식품등·무농약농산물·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·개발과 보급 및 교육·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·개발·보급하거나 교육·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·훈련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,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·훈련을 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(이하 “교육훈련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·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·유통·수출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, 생산자단체, 유통업자,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

2.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

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□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(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)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농어업 환경의 유지·개선 실적

2.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(이하 “유기식품등”이라 한다),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·유통·수출 실적

3. 유기식품등, 무농약농산물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

4.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·보급 실적

5.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·훈련 실적

6. 농약·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

7.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 항목 신설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와 유기식품 생산·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기준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

### ○ 작성자

충청북도 유기농산과장 최 낙 현